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일본 연금법상 이혼 시 연금분할제도

정명현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I 들어가며

이혼 시의 연금분할에 관한 일본 후생연금보험법의 개정은, 중년층 이상의 비교적 혼인기간이 긴 부부의 이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녀의 임금수준 및 고용 격차 등을 배경으로, 이혼 후의 부부 쌍방의 연금수급액에 큰 격차가 발생하여, 고령기에 이혼한 경우 여성의 연금액(소득수준)이 낮다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도입된 것이다. 2007년 4월 이전 법개정 이전에도, 재판에 의해 이혼 시의 연금분할은 가능하였으나, 어디까지나 피보험자의 연금의 일부를 배우자가 간접적으로 수령하는 형태였고,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 후 이혼 시 연금분할제도는, 분할된 연금이 직접 국가로부터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도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중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른 이혼 시 연금분할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개관

일본의 공적연금에는 세 종류가 있고,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둔 모든 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으며, 근로방식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제도가 결정된다.¹⁾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는 노령·장해·사망에 의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에는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1 公的年金の種類と加入する制度, 日本年金機構
<https://www.nenkin.go.jp/service/seidozenpan/shurui-seido/20140710.html> 참조.

제3호 피보험자의 세 종류가 있다.²⁾

제1호 피보험자는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피용자연금각법(被用者年金各法)에³⁾ 따른 노령급부등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한다.⁴⁾ 농업등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학생, 아르바이트 종사자, 무직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2호 피보험자는 후생연금보험 등 피용자연금각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 조합원 또는 가입자로서, 월급여자,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⁵⁾ 국민연금 보험료는 후생연금보험료에 포함되므로, 후생연금 대상자는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도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후생·공제제도가 국민연금제도에 기초연금출처금을 제공하게 된다. 제3호 피보험자는 제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로서 주로 제2호 피보험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중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단, 연간수입이 130만엔 이상으로서 건강보험의 부양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3호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제1호 피보험자가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배우자가 가입하는 연금제도에서 일괄 부담한다.⁶⁾

2) 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자는 후생연금보험제도를 통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2호 피보험자로 분류되고, 국민연금의 급부인 기초연금에 더하여 후생연금을 받게 된다.⁷⁾

3) 공제연금

공제(조합)제도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서 상시근무하는 자가 조합원(사립학교 교직원공제에서는 가입자)이 된다. 공제조합에는 단기급부와 장기급부가 있으며, 단기급부는 건강보험과 같은 급부제도를, 장기급부는 연금급부와 같은 급부제도를 시행한다. 원칙적으로 2015년 10월 1일 이후에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조합등의 장기급부는 후생연금이 된다. 2015년 9월 30일 이전에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조합등의 장기급부는 공제연금이 된다.⁸⁾

III 이혼 시 연금분할제도

일본의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의해 보험료 납부 및 연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근로자는

2 国民年金法 제7조.

3 后生年金보험법,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 사립학교교원공제법이 이에 해당한다.

4 国民年金法 제7조 제1항.

5 国民年金法 제7조 제2항.

6 国民年金法 제7조 제3항.

7 厚生年金保險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제1항.

8 公的年金の種類と加入する制度, 日本年金機構.

제2호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이들 피보험자는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을 의하여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대상자로서, 보험급부와 관련하여 이혼 시 연금분할에 관한 특례 및 피부양배우자기간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⁹⁾ 피보험자가 이혼한 경우, 피보험자와 피부양배우자는 대상기간(혼인기간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의 후생연금을 분할하여 각각 자신의 연금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할방법에는 합의분할과 3호분할 두 가지가 있다.¹⁰⁾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개인단위의 급부로서, 기초연금은 이혼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이혼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후생연금의 보수비례부분에 대한 것이다.

1) 합의분할제도

합의분할제도는 다음의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후생연금(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기간 포함)의 후생연금보험료(표준보수월액·표준상여액)를 분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해 분할되는 보험료는 혼인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록으로 한정된다.¹¹⁾

- 2007년 4월 1일 이후에 이혼 또는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일 것 (사실혼관계에 있던 기간에, 일방 당사자가 국민연금의 제3호 피보험자였던 경우에 한한다.)
-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해 연금분할의 비율(안분(按分)비율)을 정하였을 것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안분비율을 정할 수 있음)¹²⁾
- 청구기한(원칙적으로 이혼한 날의 익일로부터 2년 이내)을 경과하지 않을 것

합의분할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합의분할의 대상이 되는 혼인기간 중에 3호분할 대상이 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분할을 청구한 시점에 3호분할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3호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3호분할에 의한 표준보수의 분할에 더하여, 합의분할에 의한 표준보수의 분할도 시행한다.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안분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¹³⁾

청구할 수 있는 안분비율은 분할대상 당사자의 대상기간 내 표준보수총액의 합계액에 대한 분할받는 당사자의 대상기간 표준보수총액의 비율 초과 2분의 1 이하의 범위(안분비율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¹⁴⁾ 즉, 안분비율

9 厚生年金保険法 (昭和二十九年法律第一百五十五号, 昭和十六年法律第六十号의 전부개정) 第三章の二 離婚等をした場合における特例 (第七十八條の二—第七十八條の十二), 第三章の三 被扶養配偶者である期間についての特例 (第七十八條の十三—第七十八條の二十一).

10 離婚時の年金分割, 日本年金機構,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u/kyotsu/jukyuu-yoken/20140421-04.html> 참조.

11 厚生年金保険法 제78조의2.

12 '안분비율(按分割合)'은 당사자의 표준보수 개정 또는 결정 후 분할대상 당사자(피보험자)의 대상기간 표준보수총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분할받는 당사자의 대상기간 표준보수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厚生年金保険法 제78조의2 제1항.

13 厚生年金保険法 제78조의2 제2항.

14 厚生年金保険法 제78조의3 제1항.

은 연금분할의 대상기간의 표준보수합계액 중, 연금분할을 한 후 분할분을 받는 자의 지분을 표시한 것으로서, 안분 비율의 상한은 50%가 된다.¹⁵⁾

2) 제3호 피보험자기간의 연금분할제도 (3호분할제도)

3호분할제도는 다음의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였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2008년 4월 1일 이후의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후생연금보험료(표준보수월액, 표준상여액)를 2분의 1씩 당사자간에 분할할 수 있는 제도이다.¹⁶⁾ 이 제도에 의해 분할되는 보험료는 2008년 4월 1일 이후의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기간 중의 기록에 한한다.¹⁷⁾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와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피부양배우자로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2008년 5월 1일 이후에 이혼 또는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일 것
- 혼인기간 중에 2008년 4월 1일 이후의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기간이 있고 후생연금기록(표준보수월액, 표준상여액)이 있을 것
- 청구기한(원칙적으로 이혼한 날의 익일로부터 2년 이내)을 경과하지 않았을 것

피부양배우자에 대한 연금 및 보험금부에 대해서는, 피부양배우자가 있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 당해 피부양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담한 것이라는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¹⁸⁾ 피보험자의 피부양배우자는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상기간(당해 특정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였던 기간으로서 또한 그 피부양배우자가 피보험자의 배우자로서 제3호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말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기간의 표준보수의 개정 및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¹⁹⁾ 3호분할로 연금분할을 받은 피부양배우자는, 자신의 후생연금수급자격(노령, 장애 등)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게 된다. 즉 노령에 달할 때까지 노령후생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분할대상인 피보험자(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자신의 후생연금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분할은 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의 금액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초연금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²⁰⁾

합의분할의 대상이 되는 혼인기간 중에 3호분할 대상이 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분할을 청구한 시점에 3호분할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²¹⁾ 3호분할제도에 대해서 당사자 쌍방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단,

15 離婚時の年金分割について, 日本年金機構, p.4.

16 厚生年金保険法 제78조의14.

17 離婚時の年金分割について, 日本年金機構, p.1.

18 厚生年金保険法 제78조의13.

19 厚生年金保険法 제78조의14.

20 第3号被保険者期間についての厚生年金の分割(3号分割),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topics/bukyoku/nenkin/nenkin/kousei-bunkatu/01.html> 참조.

21 厚生年金保険法 제78조의20.

분할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자이고, 이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연금액의 기초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3호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분할제도에 따라 후생연금기록을 당사자간에 분할한 경우에는, 당사자 각각의 노령후생연금등의 연금액은 분할 후 기록에 기초하여 계산된다.²²⁾ 이혼 후 동일한 상대와 재혼한 경우에 청구기한은, 하나의 혼인기간별로 판단된다.²³⁾

3) 연금분할청구의 기한

(1) 원칙

연금분할청구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날의 익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i) 이혼을 한 때, ii) 혼인을 취소한 때, iii)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여 계속하여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이후 i) 또는 ii)의 이혼 또는 혼인 취소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 또는 ii)에 해당하는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면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²⁴⁾

(2) 연금분할청구기한의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심판신청을 하고, 본래 청구기한이 경과 후, 또는 본래 청구기한 경과일 전의 1개월 이내에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하고, 본래 청구기한이 경과 후 또는 본래 청구기한 경과일 전의 1개월 이내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 안분비율에 관한 부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본래 청구기한이 경과 후 또는 본래 청구기한 경과일의 1개월 이내에 안분비율을 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안분비율에 관한 부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본래 청구기한이 경과 후 또는 본래 청구기한 경과일 전 1개월 이내에 안분비율을 정한 화해가 성립된 경우

분할을 위한 합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한 안분비율을 결정한 후, 분할절차 이전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분할청구가 인정된다. 이 경우 분할청구 시 연금분할의 비율을 명확히

22 離婚時の年金分割について, 日本年金機構, p.1.

23 離婚時の厚生年金の分割 (3号分割制度), 日本年金機構,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u/kyotsu/jukyuu-yoken/20140421-03.html>.

24 離婚時の年金分割, 日本年金機構,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u/kyotsu/jukyuu-yoken/20140421-04.html>.

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²⁵⁾

4) 연금분할의 효과

연금분할에 의해 양 당사자의 연금은 분할 후의 납부기록으로 계산된다. 즉 분할한 당사자는 자신의 후생연금 납부기록(표준보수월액·표준상여액)에서 상대방에게 분할분을 제공하고 남은 기록으로 연금액이 계산된다. 그리고 분할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의 후생연금 납부기록과 상대방으로부터 분할분을 받은 기록으로 연금액이 계산된다.²⁶⁾ 또한 분할 후의 표준보수에 기초하여 노령후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후생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등에 의해 수급자격기간을 충족하였을 것과 생년월일에 의해 정해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연금분할의 효과는 후생연금의 보수비례부분(후생연금기금이 국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포함)에 한정되며, 국민연금의 노령기초연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노령후생연금 및 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연금분할을 한 달의 익월부터 연금액이 변경된다.²⁷⁾

5) 정보제공

연금분할의 비율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고,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안분비율) 되어 있으나, 사전에 연금분할의 협의에 필요한 분할의 범위, 분할 대상이 되는 기간 중의 정보제공(정보통지서)을 받을 수 있다.²⁸⁾ 정보통지서의 청구는 당사자 2인이 함께 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노령후생연금이나 장해후생연금의 대상자는 연금분할 시 연금예상액을 미리 계산하여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연금분할이 시행된 후에는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IV 연금분할의 절차

연금분할의 절차는 당사자가 표준보수개정 청구를 위해 대상기간의 표준보수총액, 안분비율의 범위, 산정기간 등 연금분할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정보통지서로 청구하고,²⁹⁾ 일본연금기구가 당사자에게 정보통지서를 발송하면, 연금분할과 안분비율에 관한 당사자들의 협의절차가 개시된다. 이 때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 내용에 근거하여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재판절차를 신청하여 안분비율을

25 앞의 주.

26 厚生年金保険法 제78조의6.

27 厚生年金保険法 제78조의10 제1항 및 제2항.

28 離婚時の厚生年金の分割 (合意分割制度), 日本年金機構,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u/kyotsu/jukyuu-yoken/20140421-02.html>

29 厚生年金保険法 제78조의4.

정할 수 있다. 이 때 가정법원은, 당해 대상기간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 및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안분비율을 정할 수 있다.³⁰⁾ 안분비율이 결정되면 당사자는 이에 근거하여 표준보수개정청구서를 연금사무소에 제출하여 연금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³¹⁾ 일본연금기구는 안분비율에 근거하여 각 당사자의 후생연금 표준보수를 개정하고, 개정된 표준보수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³²⁾ 연금분할의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절차	내용
1	정보통지서의 청구수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분할에 필요한 정보통지서의 청구는 당사자 2인이 함께 또는 단독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 다음의 당사자는 연금분할시의 연금예상액을 시산(試算)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세 이상의 자로서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는 당사자는 노령후생연금의 예상액 - 장애후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당사자는 장애후생연금의 예상액
2	연금분할을 위한 정보통지서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연금기구에서 정보통지서를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인이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각자에게 교부 ② 일방당사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한 경우에는 각자에게 교부 -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한 자에게만 교부
3	협이에 의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통해 '연금분할 청구를 하는 것'과 '분할하는 경우의 안분비율'의 합의가 필요하다 • 3호분할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고, 제3호 피보험자였던 당사자의 절차에 따라 연금분할이 인정된다
4-1	합의가 성립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에 의해 연금분할의 비율 등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분할의 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2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당사자가 가정법원에 다음의 재판절차를 신청하여 안분비율을 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판절차 ② 조정절차 ③ 이혼소송에서 부대처분의 절차
5	연금분할의 청구수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분할의 청구는 이혼후, 양당사자 또는 어느 일방이 연금사무소에 대해 '표준보수개정청구서'에 안분비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정보통지서의 청구만으로는 연금분할을 할 수 없다. 또한 청구기한(이혼을 한 날의 익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연금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 연금분할은 정보통지서를 받고 안분비율을 정했다 하더라도, 연금사무소에 연금분할의 청구수속을 하지 않으면 표준보수가 변경되지 않는다.

30 厚生年金保険法 제78조의2 제2항.

31 厚生年金保険法 제78조의2 제3항.

32 厚生年金保険法 제78조의8.

단계	절차	내용
6	표준보수개정통지서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연금기구는 안분비율에 근거하여 후생연금의 표준보수를 개정하고, 개정 후 표준보수를 일본연금기구로부터 각자에게 통지한다. * 공제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조합 등으로부터도 통지가 도달한다.

V 연금분할절차에 필요한 서류

1) 정보통지서의 청구 수속

정보통지서의 청구는 이혼 전 또는 후에 모두 가능하다. '연금분할을 위한 정보제공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청구자의 연금수첩 또는 기초연금번호통지서
- 혼인기간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각자의 호적초본, 호적의 전부사항 증명서 또는 각자의 호적의 개인사항증명서 등)
- 사실혼관계에 있는 기간의 정보통지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서류(주민표 등)

2) 합의분할의 청구 수속

합의분할의 청구는 이혼을 한 후에 '표준보수개정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청구자의 연금수첩 또는 기초연금번호통지서
 - 혼인기간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각자의 호적초본, 호적의 전부사항 증명서 또는 각자의 호적의 개인사항증명서 등)
 - 청구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한 것으로서, 양 당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각자의 호적초본, 호적의 전부사항 증명서, 각자의 호적의 개인사항증명서 또는 주민표 등)
 - 사실혼관계에 있는 기간의 합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서류(주민표 등)
 - 연금분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서류 (이하의 서류 중 하나)
 - i) 협의에 의해 연금분할의 비율을 정한 경우 (양 당사자 또는 각자의 대리인이 절차 진행)
 - 연금분할하는 사실 및 안분비율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서명한 서류
 - 공정증서의 등본 또는 초록등본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서증서(私署證書)
 - ii) 법원의 절차에 따라 연금분할의 비율을 정한 경우 (양 당사자 중 한사람이 수속할 수 있음)
 - 심판(판결)의 경우: 심판(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및 확정증명서
 - 조정(화해)의 경우: 조정(화해)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 연금분할의 청구를 받는 당사자(대리인 포함)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운전면허증, 여권, 안면사진이 부착된 주민 기본대장카드, 인감 및 그 인감에 관한 인감등록증명서 등)
- *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에 관하여 상기 서류 이외에, 위임장(연금분할의 합의서 청구용)의 '본인(위임하는 자)' 란에 날인한 인감에 관하여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다.

3) 3호분할의 청구수속

3호분할의 청구는 이혼을 한 후에 '표준보수개정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사무소에 제출한다.

- 청구자의 연금수첩 또는 기초연금번호통지서
- 혼인기간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각자의 호적초본, 호적의 전부사항 증명서 또는 각자의 호적의 개인사항증명서 등)
- 청구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초본, 호적의 개인사항증명서 또는 주민표 등)
-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사실을 이유로 3호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기간의 3호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서류(주민표 등)

3호분할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고, 제3호 피보험자였던 당사자의 수속에 의해 연금분할이 인정된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일본의 연금법상 피용자연금각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와 피부양배우자가, 이혼, 혼인취소, 사실혼 관계 해소 등으로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연금분할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피보험자가 이혼 등을 한 경우, 피보험자와 피부양배우자는 2년 이내에 합의 또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후생연금을 분할하거나, 또는 피부양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제3호 피보험자였던 기간의 표준보수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피보험자의 소득에 생계를 의지하던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이 유지되는 기간 중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연금을 조정하고 국가가 이를 직접 지급함으로써, 이혼 시 재산분할의 형평성이 연금소득에도 확대되도록 한 제도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며 노후대비 연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현실에서, 합리적인 연금분할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国民年金法

厚生年金保険法

日本年金機構, 公的年金の種類と加入する制度

<https://www.nenkin.go.jp/service/seidozenpan/shurui-seido/20140710.html>

日本年金機構, 離婚時の年金分割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kyotsu/jukyu-yoken/20140421-04.html>

日本年金機構, 離婚時の厚生年金の分割(3号分割制度)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kyotsu/jukyu-yoken/20140421-03.html>

厚生労働省, 第3号被保険者期間についての厚生年金の分割(3号分割)

<https://www.mhlw.go.jp/topics/bukyoku/nenkin/nenkin/kousei-bunkatu/01.html>